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여 스타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지원 대상자(소기업·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6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 (필독) 신청 전 유의 사항 안내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www.jejucreator.kr) 내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은 글로벌 앵커, 제주 앵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시스템 접수 시, 회원가입 후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원 등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제주 크리에이터 앵커기업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6. 11. 30일까지
- 지원대상**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적 가치(차별화된 브랜드) 등을 창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참고 5]

[참고] THE 제주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 정의 : 제주다움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적 가치(차별화된 브랜드) 등을 창출하는 로컬 혁신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 본 사업의 'THE 제주크리에이터' 세부 요건 및 비즈니스 모델 분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정의를 준용합니다. >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대 유형	① 지역가치 ② 로컬푸드 ③ 지역기반제조 ④ 지역특화관광 ⑤ 거점브랜드 ⑥ 디지털문화체험 ⑦ 자연친화활동
-------	--

- ①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 ③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지원유형 : [A] 글로벌 앵커 유형 / [B] 제주 앵커 유형

구분	[A] 글로벌 앵커 유형(Global Anchor)	[B] 제주 앵커 유형(Local Anchor)
기본 정의	- 제주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핵심 목표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는 '세계의 별'로 성장	- 특정 상권의 활력을 이끄는 '제주 상권의 심장' 역할 수행
주요 역할	-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글로벌 브랜딩 선도 - 해외 인바운드 수요 창출 및 글로벌 인지도 확산	- 상권 내 거점(Anchor) 기능 수행 - 지역 내 인근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 견인
지향점	- 제주의 미래 경제지도를 세계로 확장하는 선두 주자	- 지역 경제 생태계의 구심점

□ 선정 규모 : 00개 사 내외 ※ 내부 사정에 의해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유형별 선정 규모(안) >

구분	[A] 글로벌 앵커 유형	[B] 제주 앵커 유형	비고(수혜사항)
서류 선정	오디션 선정 수의 최대 3배수		· 맞춤형 현장 컨설팅 · IR교육
1차 오디션	00개 사 내외		· 사업화 자금 지급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 해외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파이널 오디션	00개 사 내외		· 추가 사업화 자금 지급 등

※ 위 선정 규모는 ‘서류 선정’ 규모이며,
사업화 자금은 피칭 오디션 선정 시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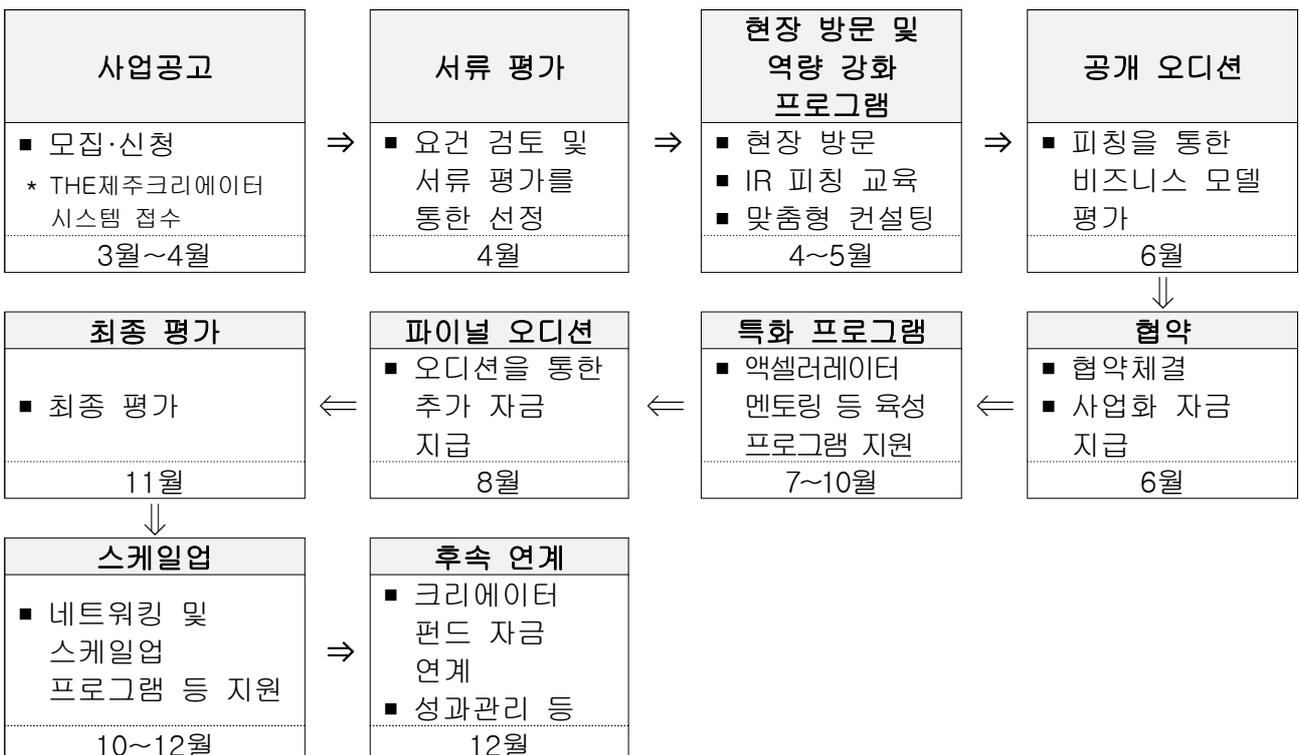
□ 지원 내용 : 역량 강화 프로그램,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도비 100%) 등 지원

※ 1차 오디션 선정 시, 최대 6천만원 지원 / 파이널 오디션 선정 시, 최대 4천만원 지원

※ 최소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절차



※ 추진 절차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 지원

※ 1차 오디션 선정 시, 최대 6천만원 지원 / 파이널 오디션 선정 시, 최대 4천만원 지원

※ 최소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방법: 수혜기업 직접지급

<유형별 지원 항목>

구분	분류	지원 내용
[A] 글로벌 앵커 (Global Anchor)	글로벌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용 브랜드 네이밍 및 GBI(Global Brand Identity) 개발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다국어 상세 페이지 구축 • 글로벌 규격(수출용) 전용 패키징 및 디자인 개발
	마케팅 및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글로벌 홍보 영상 제작 • 글로벌 이커머스(아마존, 쇼피 등) 마케팅 비용 • 글로벌 여행 플랫폼(OTA) 상품 등록 및 키워드 광고 • 해외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글로벌 상권 및 브랜드 홍보 • 오프라인 마켓 홍보 및 입점, 판촉행사 등
	글로벌 진출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팝업 스토어 및 쇼룸 운영비 지원 • 외국인 전용 스마트 결제 시스템 및 다국어 서비스 도입
	인증 및 권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 등) 출원 및 등록비 • 국제 품질 인증 획득(FDA, CE, HALAL, Vegan 등)
	사업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비 (원부자재 구입 및 외주 용역비)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투자 유치(IR) 교육 및 피칭 지원
[B] 제주 앵커 (Local Anchor)	거점 공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유입을 위한 복합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 로컬 페스티벌 및 지역 거점 활성화 기획 운영
	지역 상생 및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소상공인 연계 협업 상품(굿즈, 콜라보 메뉴 등) 개발 • 상권 통합 바우처 발행 및 공동 마케팅 운영
	로컬 브랜딩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지역 타겟 광고(SNS, 제주 로컬 매체 등) 및 프로모션 • 브랜드 가이드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권리 확보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지식재산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출원 및 등록 • 전문가 멘토링 및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컨설팅 • 지역 거점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IR) 교육

<사업화 자금(세부 예산) 지원 항목(안)>

항목	상세 내용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콘텐츠 제작 등 용역비
브랜드 및 홍보비	• 브랜드(CI, BI), 디자인, 마케팅·홍보 등 용역비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글로벌 지원 물류비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전문가 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컨설팅(각종 수출 서류지원, 관세행정 통관지원, 계약서 검토 등) 비용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행사 팝업 부스 포함)
재료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기타	• 축제, 행사 운영 등 로컬·글로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용역비
<p>◆ 집행 관련 주요 참고 사항</p> <p>1)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2)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 매출전표(사업비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3)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당해연도 수혜자 간,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등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4) 사업화 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세부 지원 항목, 집행 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p> <p>◆ 지원 제외 항목</p> <p>1)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및 시제품 제작 등과 연관성이 없는 재료비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3) 기계·장치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 구매 4) 공과금, 관리비 등의 운영비 5)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 가능한 비용</p>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협약 후,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특화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명	지원 내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 사전 기업 자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BM) 진단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제공
IR 피칭 마스터 스쿨	• 공개 오디션 대비를 위한 IR 자료 고도화 지원 및 전문 피칭 심화 교육 진행
글로벌 인사이트 트립	•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창업 생태계 벤치마킹, 현지 투자자 대상 IR 피칭 및 글로벌 팝업 전시 참가 지원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 오디션 및 참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등을 통한 기업 홍보 기회 제공 등
네트워킹 행사	• 대형 유통사 MD, 글로벌 바이어, 전문 투자사 (VC),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및 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 프로그램 불참 시 1차 오디션, 파이널 오디션 등 평가에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연계 지원

- (후속 연계)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 펀드 및 제주 창업 유관기관 파트너십 연계 지원 등

< 후속 연계(안) >

사업명	지원 내용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제주 크리에이터 전용펀드 투자 우선 검토		
제주 창업 유관기관 파트너십 연계 팀장 현장 지원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연계 온라인 홍보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판로개척 현장 컨설팅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 보증제도 지원 관련 현장 컨설팅	
	제주산학융합원	교육·인건비 지원 관련 현장 컨설팅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	원료개발·제품생산 현장 컨설팅
		식품사업팀	식품제조·HACCP인증 현장 컨설팅
용암해수제품다문화팀		용암해수활용 제품개발 현장 컨설팅	

3

신청자격

□ 신청분야 :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2가지 유형 중 택 1

<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원 유형(안) >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A] 글로벌 앵커 유형	[B] 제주 앵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 신청자격

○ (공통)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이외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을 두고 있거나,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본사, 지사, 자회사 중 택 1)
-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인재 1명 이상 채용 필수(*도의 기업에 한함)
- 제주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반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한 기업
- 자신만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문화·관광·푸드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창작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 * 주관기관은 필요시, 신청 요건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협조 시 신청·선정 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②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③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 ④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⑥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⑧ 공고일 기준 2명 이상 고용이 안 된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서 확인)
- ⑨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6. 3. 6.(금) 17:00 ~ 4. 6.(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또한, 접수는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되며, 마감 임박에 따른 지연 및 미접수 건은 예외 인정 불가

□ 신청방법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www.jejucreator.kr) - 사업 신청 - 지원사업 - 공고조회

◆ 유의 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 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주 사업 참여자라면 THE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신청서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 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 2)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 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 완료” 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로 변환 후 업로드(* PNG, JPG 등 파일 업로드 불가)

< 제출 서류 내역 >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국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4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법인)	
	5	재무제표('23-'24) 및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5) * '23년, '24년, '25년 * 창업기업은 적용 가능한 연도부터 제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7	사업계획서[서식1]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9	청렴서약서[서식3]	
해당	10	수출입실적증명서('23-'25) *직접수출(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인정) *간접수출(간접수출실적증명서) 유티레이드허브 발급만 인정(www.utradehub.or.kr)	
	11	(법인 시) 법인등기부등본	
	12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 유의 사항

- 1)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www.jejucreator.kr)를 통해 작성·첨부
- 2)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 마감일 이후인 경우 인정**
- 3) 항목당 최대 2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 4)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 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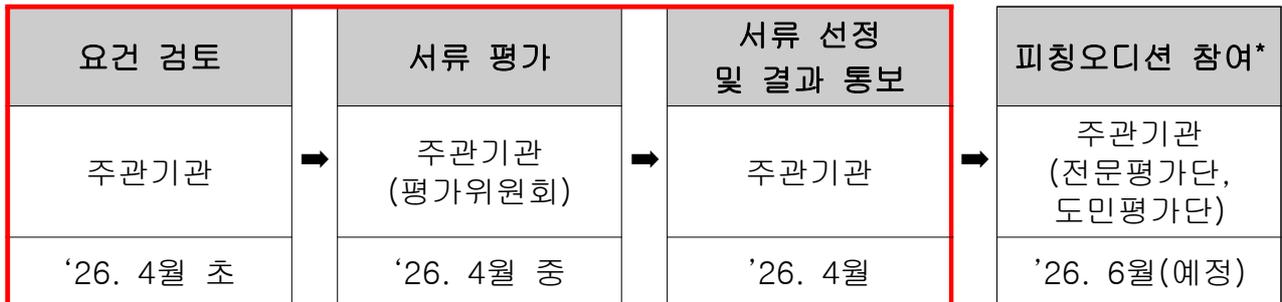
◆ 중소기업확인서

- 1) ‘소기업’ 혹은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 불가
- 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5~10일 내외 소요)
 -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5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요건 검토 및 서류 평가를 통한 선정



* 선정 후, 단계별 피칭평가(1차→파이널)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세부적인 평가계획(일정, 평가 항목, 선정 규모 등)은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평가)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사업이해도, 사업 아이템, 사업화 계획 등을 서면으로 심층 평가*

* 유형별 지역성 / 브랜드 확장성 / 상권 연계성 / 사회문제 해결형 / 글로벌 진출전략 / 글로벌 파트너십 / 향후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증

○ (최종 선정) 총 00개 사 선정

※ 내부 사정에 의해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및 문의처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② 부정 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기업·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선정기업의 사업화 자금은 주관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집행·정산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 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 본 증권의 발급 가능 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 지침 및 사업비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복지원 불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했을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구분	주관기관	연락처	이메일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4-710-1970	jejucreator@ccei.kr
		064-710-1975	
		064-710-1976	
		064-710-1979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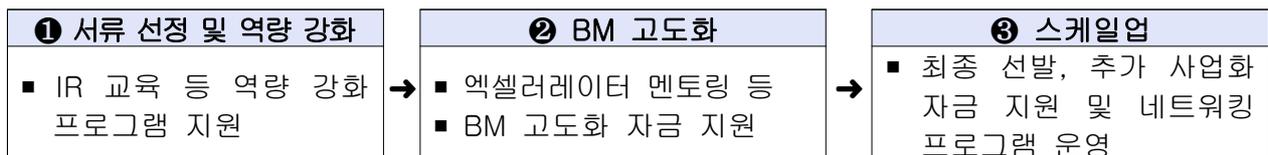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제주 크리에이터 앵커기업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
- **지원규모** : 00개 사 내외
 - ※ 내부 사정에 의해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통해 사업적 가치(차별화된 브랜드) 등을 창출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역량 강화 프로그램, BM 고도화 및 스케일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도비 100%)** 등 지원
 - ※ 1차 오디션 선정 시, 최대 6천만원 지원 / 파이널 오디션 선정 시, 최대 4천만원 지원
 - ※ 최소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 오디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유형** : 2가지 유형으로 구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A] 글로벌 앵커 유형	[B] 제주 앵커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 **지원절차**
 - ① (서류선정)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소상공인 선발
 - ② (역량강화) 기업별 특강 및 IR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③ (BM 고도화) 1차 오디션을 통해 BM 고도화 자금을 지원
 - ③ (특화)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기업 홍보 및 판로 지원, 네트워킹 등
 - ④ (스케일업) 파이널 오디션을 통해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국 단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지원 >



참고2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기간 : '26. 3월 ~ 12월 *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추진단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안)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자(소기업·소상공인) 신청·접수 * THE 제주크리에이터 시스템: www.jejucreator.kr 	'26.3.6. ~ 4.6.
↓		
서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서류에 대한 요건 검토 및 서류평가 실시 	'26. 4월
↓		
평가 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통과 기업 선정 	'26. 4월
↓		
현장 방문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 선정 기업 방문을 통한 인터뷰 등 사업계획, 기업 IR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26. 4 ~ 5월
↓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6. 6월
↓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자금 지원 - 글로벌 앵커 및 제주 앵커 	'26. 6월
↓		
특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벤치마킹 및 IR 기업 인플루언서 홍보 마케팅 등 	'26. 7 ~ 10월
↓		
파이널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26. 8월
↓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케일업(확장) 자금 지원 	'26. 8월
↓		
최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자금 사용에 대한 최종 평가 	'26. 11월
↓		
스케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킹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26. 10 ~ 12월
↓		
사후관리 (후속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자(소상공인) 대상 사후관리 * 크리에이터 펀드, 유관기관 컨설팅, 성과 조사 등 	'26. 12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주요업무) 로컬 창업생태계 조성, 혁신창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지원, 액셀러레이팅 강화, 벤처 투자·융자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 (주요연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5. 03.)
 - (2019. 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액셀러레이터 등록
 - (2020.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1.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2.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2.)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
 - (2023. 02.)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주관기관
 - (2023.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3.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4.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4.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백년가게·소공인)
 - (2024.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2025. 0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주관기관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주관기관(장수소상공인)
 - (2025. 03.)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력기관(로컬브랜드)
 - (2025. 03.)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협력기관(LIPS 1)
- (보유 인프라) 창업지원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상담 공간, 회의공간, 스튜디오 등 보유
- (지원성과) 로컬 등 창업기업 200여개사 이상 지원, 매출 증대, 해외 수출 발생 등
- (프로그램) 역량강화(IR피칭, 투자), 강연, 토크콘서트, 인사이트 트립 관련 종합 컨퍼런스(J-Connect Day 등)

참고4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 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표준산업분류	업 종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711, 7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이 지정한 업종

참고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5. 부동산업	L	4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